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5
----------	-----

제출년월일 : 2010. 3. 10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가. 저비용·고효율 행정을 추구하는 2009년도 행안부의 유사·중복되는 기능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 나. 지방재정 운영방향 등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목적, 기능 및 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6조)
- 나.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중 “제3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 삭제(부칙안 제3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의견없음(10. 2. 1 ~ 2. 21)
- 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구 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비고
근 거	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위 원 장	부구청장	부구청장	
위 원	11명(공무원6, 의원2, 민간인3)	11명(공무원5, 의원2, 민간인4)	
주요기능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 등 자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심의	
대상사무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투자사업 심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15인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지방재정정기공시시”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정기공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p>
<p>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채용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p>제2조(기능)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6. 그 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5인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p> <p>③ (생략)</p>	<p>제3조(구성) ①----- -----<u>15명 이내</u>-----.</p> <p>②-----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간사) ①----- -----<u>1명</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u>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u> 또는 <u>지방재정정기공시</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운영) ①----- ----- -----<u>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정기공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u>-----.</p> <p>②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지방재정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 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위원장과 공무원의 임기는 현보직 기간까지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보조금의 관리·운용 등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공공기관, 공익단체,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①민간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일반보조금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 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후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분 결정한 범위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총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 함.)

제9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비의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신고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6조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8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성하되, 위촉직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환경미화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55)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3. 10(수)

나. 제출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10. 3. 11(목)

라. 위원회 상정 : 2010. 3. 19(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전병수 총무국장)

가. 저비용·고효율 행정을 추구하는 2009년도 행안부의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나. 지방재정 운영방향 등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목적, 기능 및 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중 “제3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 삭제(부칙안 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5.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임.
- 이는 저비용·고효율 행정을 추구하는 『2009년도 행안부의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것으로

나.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